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2076 판결 [공사대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42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2076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송지원, 오엘림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양만우, 최윤서

변론 종결2021. 9. 9.

판결 선고2021.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C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7억 원 상당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C은 2016.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6억 6,000만 원에 하도급주었는데, 피고는 'E' 명의로 주식회사 C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잔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1) 주식회사 C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주식회사 C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17. 3. 29.경 이 사건 공사의 남은 부분(이하 '잔여공사'라 한다)을 피고에게 14억 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주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피고를 대신하여 창호, 판넬공사만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F을 수급자로, E를 하수급자로 한 도급계약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공사는 주식회사 F과 E의 하도급(일괄)계약의 동의로 시작하며 동시에 계약이행증권(일괄, 공정별)을 제출로 시작한다.

3. 본 공사는 건축주(원고)와 하수급업체와의 견적서상 합의된 금액(13억 원)으로 시공하며 공사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4. 건축주는 정당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 후 정당하다고 판단 시 지급한다(단, 총 공사는 14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하도급(일괄)계약 전 공사금액은 건축주와 무관하며 그 후 공사금액은 건축주 동의 하에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원사업자로부터 받아 은행을 통해 지급받는다.

2)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책임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2. 계약금액: 14억 원

3. 계약보증금: 공정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4. 공사내용: D 신축공사(창호, 판넬, 내외장 마감공사, 냉난방기 및 기타공사)

5. 계약기간: 2017. 3. 22. ~ 2017. 6. 30.

위 계약이 체결되어 시공 중인 상기 공사 중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도면 및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거 본 공사를 준공기한 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신의와 성실로 책임 준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 손해배상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책임각서로 제출합니다.

3) 원고는 2017. 3. 30.부터 2017. 5. 10.까지 주식회사 F를 통하여 피고에게 232,356,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피고는 2018. 8. 17.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2017. 6. 30.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공사대금 채무변제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는데도 선급금을 지급하면 잔여공사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원고의 대리인(G)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32,356,500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377, 2018고단206(병합)},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2019. 1. 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346), 2019. 2. 21. 피고의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306).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잔여공사는 약정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2017. 7. 7.경1)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잔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32,356,5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32,356,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금원은 원·피고 사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이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 G와 협의 하에 하수급업체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행한 부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설령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건축주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356,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하수급업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4, 6, 9, 10, 24, 26, 27,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32,356,500원이 선급금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6982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여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232,356,5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2017. 3. 24. 주식회사 C에게 '지급금액: 5억 4,000만 원, 미지급금액: 6,000만 원, 피고는 더 이상 주식회사 C에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하수급업체들에게, '귀사의 시공사(주식회사 C)의 하수급업체(피고)와 계약이 체결되어 시공 중인 상기 공사 중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으로 현재 공사 중단 단계에 있으나 공사진행에 따른 미지급금을 피고가 기성금 수령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미지급시 원고가 건물 준공이

완료 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인건비지급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원고로부터 잔여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인건비지급확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하수급업체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었고, 그에 대해 향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게 될 기성금으로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되, 원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2017. 4. 28.경 이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에게 하수급업체들의 계좌번호 및 지급금액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자 H이 그에 따라 해당 계좌에 그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H은 2017. 3. 30.경 G으로부터 공사비 미지급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이는 G이 피고로부터 받은 내용을 H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하수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만약, 원고가 선급금이 아니라 잔여공사와 무관하게 하수급업체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주식회사 F을 통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G(원고의 대리인)과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1, 2차 기성으로 하수급업체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인 H(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은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공사 대금으로 하수급업체들에 대해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정산합의의 당사자인 J(하수급업체)의 직원 I은 '1차적으로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과의 협의 또는 하수급업체들과의 정산합의를 통하여 피고의 위 의무가 원고에게 이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원고는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하수급업체들에게 232,356,500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는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하수급업체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위 금원의 지급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가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변제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금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선행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주장,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232,3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김보현

판사전지은

1) 원고는 위 계약이 2017. 7. 7.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2021. 9. 3.자 준비서면),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의 미이행 및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 하에 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만을 다투고 있다.